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25. 12. 1.부터 ‘26. 2. 28.까지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 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1부. 끝.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책임자	과장	유성오 (02-2110-4075)
		담당자	사무관	김택균 (02-2110-4082)

《불임》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문

□ 시행 기간 : '25. 12. 1.(월) ~ '26. 2. 28.(토)

□ 대상자

○ 시행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 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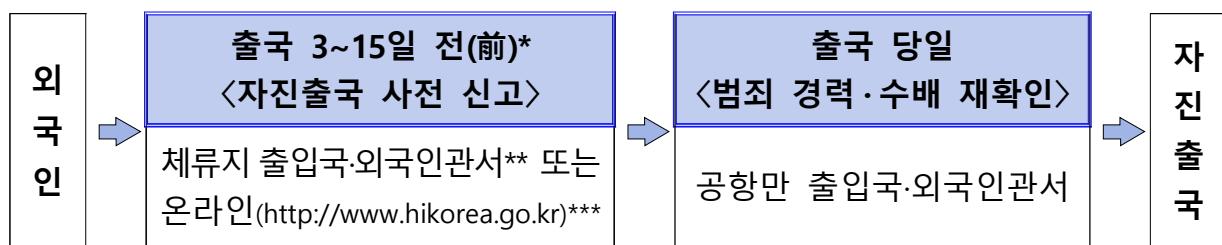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특별 자진신고 절차

※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절차에 따름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 **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 제출

*** 인적사항, 체류지 주소,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 기재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